

건축심의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5. 7. 29.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건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건축물의 신축 및 증·개축(리모델링) 등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본교 교원 및 일반직원 중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건축과 관련된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설계검토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
3. 공사관리 및 진행상태 감독에 관한 사항
4. 건축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3-0-35 건축심의위원회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